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정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247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7. 27.

발의자 : 조정식 · 민홍철 · 임종성
정성호 · 박주민 · 이원욱
장병완 · 전현희 · 박정
윤관석 · 노웅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1항·제2항).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3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을 “5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을 “2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5조(별 칙) ①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3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p>제35조(별 칙) ① ----- ----- ----<u>5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----- 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<u>2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----- ----</p>